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08호
- 나.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찬성자 13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2월 6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서울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과 업무범위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민간전문가의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광고·마케팅·경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하여 서울시 브랜드¹⁾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자격기준, 업무범위,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 등(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개정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 정책을 체계화하고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를 위촉하여 서울 브랜드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상징물의 종류) 중 제2호는 브랜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로써 현 서울시 브랜드인 “I·SEOUL·U”의 의미 등과 서울시 브랜드의 연혁을 설명하고 있음.

- 최근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국내외의 주류 문화를 형성해 가는 분위기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은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참여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행정 분야에 위촉·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정책상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 시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시장 등이 자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함으로써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임.

< 서울브랜드총괄관 자격기준(안 제6조제2항 각 호) >

구분	조문	준용 대상
제1호	대학에서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총괄건축가 ·「건축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호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주택정책실장 응모자격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189호)
제3호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여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임기 역시 2년으로 정하고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브랜드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겸임 관련 규정은 위촉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 취지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 등(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를 브랜드 정책 관련 자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 경력을 통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까지 다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안 제6조제4항 각 호) >

구분	내용	브랜드위원회 자문범위
제1호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해당 기능과 유사
제2호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제3호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민관협력 방안 자문에 한정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브랜드 정책 관련 자문

- 현행 서울브랜드위원회는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조정만을 수행하고 의결권한이 없어 실제 집행기관에 자문결과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장의 요청에 따라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브랜드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는 경우,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서울시는 2015년 출범한 “I·SEOUL·U” 를 새로운 서울시 브랜드로 교체하기 위하여 선호도 조사(2차)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

(3) 수당의 적정 규모(안 제6조제7항)

-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브랜드총괄관에 준하는 민간전문가로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²⁾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총괄건축가(2014.9. 최초위촉)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직으로서 지급되는 수당 또한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음. (현재 1일 8시간, 주 4일씩 4주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타 수당 포함 2023년에는 1억 2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비용추계서 참조.)
- 다만, 상위법령의 규정 없이 조례 개정만으로 비상근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총괄건축가의 수당) ①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총괄건축가의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학술 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상위법령의 규정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의안번호
508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종환의원	2023. 2.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서울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과 업무범위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민간전문가의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추진경과	○ 2023. 2. 6.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이종환 의원)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특이사항 없음		
대응방안	○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서울브랜드담당관	팀장	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2133-6187) 담당 행정6급 현미희 (☎2133-6194)